2016년도 제23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 1. 일 자 2016년 11월 24일(목)
-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 3. 출석위원 이 주 열 의 장(총재)

함 준 호 위 원

장 병 화 위 원(부총재)

이 일 형 위 원

조 동 철 위 원

고 승 범 위 원

신 인 석 위 원

- 4. 결석위원 없음
- 5. 참 여 자 김 민 호 부총재보 윤 면 식 부총재보

임 형 준 부총재보 허 진 호 부총재보

전 승 철 부총재보 채 선 병 외자운용원장

장 민 조사국장 신 호 순 금융안정국장

박 종 석 통화정책국장 이 환 석 금융시장국장

박 이 락 금융결제국장 서 봉 국 국제국장

손 욱 경제연구원장 장 정 석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이 승 헌 공보관 박 철 원 의사팀장

6. 회의경과

<의안 제41호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개정(안)>

(1) 담당 부총재보가「한국은행법」제28조 및 제64조에 의거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의 적격담보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MBS)을 포함하는 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는 그동안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일부 위원은 MBS의 당행 담보증권 인정기한을 연장하려는 취지를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지난해 안심전환대출 취급과 관련하여 MBS를 보유하게 된 은행들의 실질적인 보유부담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은행의 담보증권 수요가 차액결제이행용 담보 납입비율 인상 등으로 증가할 수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MBS를 당행 담보증권에 포함하는 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고. 최근 시장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된 점도 고려하였다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담보증권 인정기한은 연장하되, 당행의 신용위험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만기·신용등급별 담보인정비율, MBS의 담보인정 한도 등을 조정할 필요성은 없는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정책일관성 측면에서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 권의 인정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최근의 채권시장 상황 변화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종전과 동일하게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답변하 였음.

이와 같은 관련부서의 보고 후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아래와 같음.

일부 위원은 과거 공개시장 대상증권으로 MBS를 포함할 때는 기한 제한이 없었는데 이번 적격담보에 대해서는 1년 연장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과 담보증권의 규정 개정에 대한 의사결정의 판단근거가 각각 상이한데 기인한다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규정을 다시 1년간 재연장하는 방식의 의사결정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1년 후에 도 같은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출담보증권의 범위에 대한 체계적 이고 일관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붙임>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생략)

<의안 제42호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개정(안)>

(1) 담당 부총재보가「한국은행법」제28조 및 제81조에 의거하여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차액결제이행용으로 제공하는 담보증권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을 포함하는 기간을 1년간 연장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는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앞서「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개정(안)에 대한 보고로 갈음하겠다고 발언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붙임>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개정(안)(생략)